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에 의거 도서관관장의 직무를 사서직으로 변경하고 3개 도서관체계를 중앙과 분관으로 구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금촌도서관을 파주시립도서관으로 하고, 문산 및 법원도서관을 각각 파주시립도서관문산분관, 파주시립도서관법원분관으로 한다.

(안 제2조)

나. 도서관장직을 현행 문화체육과장에서 도서관담당으로 변경하여 도서관관리의 효율을 기한다. (안 제3조)

다. 자료복사요율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 B5, A3규격 삭제, 프린터 A4추가(별표)

□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건은 96년3월1일 제정되어 '98년1월17일(조례 제199호)1차 개정된바 있는 현행 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를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관련조항을 부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관내 소재한 3개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 지번 일부를 변경하고(안 제2조), 현재 문화체육과장이 맡고있는 도서관장직을 도서관담당으로 변경하며(안 제3조), 도서자료의 복사 및 프린트 등 사용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별표)

- 이상의 조례 개정안 3개조항 중 “안 제2조”와 “안 제6조제2항 별표”의 개정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부합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 안 제3조의 도서관장직을 현행 “문화체육과장”에서 “도서관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그 근거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司書職)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 부적합사유로 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음.

다 음(법령부적합 사유)

- 현행 시립도서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3조(관장)에서 “문화체육과장은 각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며, 각 도서관 관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라 함은 동 조례의 시립도서관 관리사무가 문화체육과장에게 분장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 제정당시 이와 같이 규정된 것이며
- 그 사무분장 근거는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총무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과의 사무분장) 규정에 두고 있으며, 또한 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제1항에 의거 제정된 것인 만큼, 시립도서관을 전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이상, 문화체육과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위에서 개정하려는 안 제3조 규정은 향후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 도서관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될 때까지는 개정할 수 없는 안이므로 당 위원회의 검토·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것임.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0.11.14조례제35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101조내지 제10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①시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총무국) ① 총무국에는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0.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2000.11.22규칙제16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조례”라한다)제2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본청의 국장, 실·과장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국장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총무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시민과장·시세과장·도세과장·회계과장·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과의 사무분장)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第102條(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1994·3·16, 1994·12·20>